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3-6호

「유료도로법 시행규칙」제8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「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제2021-687호, 2021.5.3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 노선 특성 반영 및 평가점수 척도 세분화를 위해 「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」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실시

나.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 개선

- 다수법인이 만점인 변별력이 부족한 항목 개선
- 결과 중심에서 예방을 강조한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선
(사고결과 위주→사고예방·대응·노력 위주)
- 다양한 노선 특성에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항목 개선
(로드킬 관련 도시부·지방부 등 고려한 평가내용 개선 등)
-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지표 개발
(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, 시설물관리실태, 포장 관리 적정성, 시설안전 개선 노력 등)

다. 가·감점 항목 개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사고 발생 시 감점 항목 적용
- 「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이 미비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된 경우 사고 정도별로 감점 항목 적용(최대 2)

라. 기타 사항

- 각 부문별 항목의 평가내용 세분화
* 도로안전성(교통안전, 시설안전), 이용편의성(도로편의성, 시설편의성, 이용만족도), 관리적정성(운영 효율성, 도로공공성)

3. 기타사항

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>정보마당>법령정보>행정규칙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(전화 044-201-45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